

##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

### 결 정

정본입니다.

2020.07.

법원주사보



사 건 2020타채1001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  
명령  
채 권 자 주식회사 ( )  
서울 ( )  
송달장소 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(만성동)  
대표이사  
송달영수인 : 전종필

채 무 자 :  
전남

제 3 채 무 자 대한민국  
광주 동구 준법로 7-12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
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(소관 : 지방국토관리청)

### 주 문

1.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.

### 청구금액

금 160,000,000원

### 이 유

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자로서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